

임원추천위원회 설치 ·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

1 관련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(자격) (개정일 2024.5.20.)

제6조(자격) ① 노동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,

-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-8173(2024.8.1.) 「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알림」 의 ⑤ (자격)

⑤ (자격) 3년 이상 근무경력

- 공개모집 응모 자격 :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
- 3년 이상 재직하여 기관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 자격 요건 강화

2 개정사유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 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자격기준의 당연 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

※ 현시점 추진 경위 : 조례 개정 당시 공사 임원 채용 일정이 연이어 진행 ('24.7.~'25.2., 상임이사 3인 및 '25.5.~9. 비상임이사 3인)되어 안정적인 채용을 위해 개정 보류 ※ 공사 노동이사 2인(임기) : '23.11.1 ~ '26.10.31.

3 주요내용

-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1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변경 적용

현 행		개 정	
[별표 1] 임원후보자 자격기준		[별표 1] 임원후보자 자격기준	
직위	자 격 요 건	직위	자 격 요 건
비상임 이사	1~3 생략 4. 노동이사는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	비상임 이사	1~3 (현행과 같음) 4. 노동이사는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4 참고사항

- 서울교통공사 현직 노동이사(2인) 임기 및 입사일자

- 노기호 이사

- 임 기 : '23.11.1. ~ '26.10.31.

- 입사일자 : '97.1.20.

- 조은호 이사

- 임 기 : '23.11.1. ~ '26.10.31.

- 입사일자 : '17.12.31.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 1]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(제9조관련)		[별표 1]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(제9조관련)	
직위	자격요건	직위	자격요건
사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 2. 확고한 개혁의지로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는 분 3.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 4. 공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	사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 2. 확고한 개혁의지로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는 분 3.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 4. 공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
감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추신 분 2.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을 갖추신 분 3.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을 갖추신 분 4.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신 분 5. 경영여건 분석과 대안 제시 역량을 갖추신 분 	감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추신 분 2.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을 갖추신 분 3.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을 갖추신 분 4.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신 분 5. 경영여건 분석과 대안 제시 역량을 갖추신 분
상임이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2.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분 3.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, 준정부기관 또는 서울시투자·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, 도시철도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이상의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4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기술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당해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. 국내외 대학교에서 행정, 경영, 법률, 회계, 교통 또는 관련 기술 분야를 강의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6. 기타 소관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	상임이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2.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분 3.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, 준정부기관 또는 서울시투자·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, 도시철도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이상의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4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기술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당해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. 국내외 대학교에서 행정, 경영, 법률, 회계, 교통 또는 관련 기술 분야를 강의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6. 기타 소관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
비상임이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경영의 감시·감독 및 공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,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2.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,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 3. 경영일반, 회계, 세무, 도시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4. 노동이사는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	비상임이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경영의 감시·감독 및 공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,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2.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,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 3. 경영일반, 회계, 세무, 도시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4. 노동이사는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※ 비상임이사 후보자 자격기준 서울시조례 개정사항 반영